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16 발의연월일: 2025. 2. 20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정성호 · 오세희

장종태 · 김영호 · 진선미

김 윤·한정애·문진석

정희용 · 정춘생 · 서영교

임미애 · 정준호 · 임호선

용혜인 • 이재강 • 신정훈

전진숙 • 이훈기 • 이수진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 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고 있음.

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살해는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며, 배우자 살해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·도

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 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50조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"을 "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0조(살인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살해)

③ 배우자를 살해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50條(殺人, 尊屬殺害) ① (생	제250조(살인, 배우자 및 직계존
략)	<u>비속 살해)</u> ① (현행과 같음)
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奪	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
屬을 殺害한 者는 死刑, 無期	<u>비속</u>
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	
다.	
<u> <신 설></u>	③ 배우자를 살해한 자도 제2
	<u>항의 형과 같다.</u>